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공고 제 2024 - 137 호

20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장

1. 응시자격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1.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그 밖에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②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가. 응시자격 확인에 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자격 확인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953호, 2023.7.17. 일부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이 변경되었고, 교육과정 변경 전에 교육(이론강의·실기연습)을 이수한 자(2023년 12월 31일 이전 이수자)는 20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부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다. 응시원서 접수 당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본인 시험일 전일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라.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2. 시험일정 등

시험 세부일정 공개일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시험 월	시험일정
	1일차	2일차	3일차		
'24.12.2.(월)	'25.1.2.(목)*	'25.1.3.(금)*	-	1월	1.13.(월) ~ 21.(화)
	1.13.(월)	1.14.(화)	1.15.(수)	2월	2.19.(수) ~ 28.(금)
'25.1.2.(목)	2.3.(월)	2.4.(화)	2.5.(수)	3월	3.4.(화) ~ 31.(월)
	3.4.(화)	3.5.(수)	3.6.(목)	4월	4.1.(화) ~ 30.(수)
2.3.(월)	4.1.(화)	4.2.(수)	4.3.(목)	5월	5.2.(금) ~ 30.(금)
	5.2.(금)	5.7.(수)	5.8.(목)	6월	6.2.(월) ~ 30.(월)
4.1.(화)	6.2.(월)	6.3.(화)	6.4.(수)	7월	7.1.(화) ~ 31.(목)
	7.1.(화)	7.2.(수)	7.3.(목)	8월	8.1.(금) ~ 29.(금)
6.2.(월)	8.1.(금)	8.4.(월)	8.5.(화)	9월	9.1.(월) ~ 30.(화)
	9.1.(월)	9.2.(화)	9.3.(수)	10월	10.1.(수) ~ 31.(금)
8.1.(금)	10.1.(수)	10.2.(목)	10.10.(금)	11월	11.3.(월) ~ 28.(금)
	11.3.(월)	11.4.(화)	11.5.(수)	12월	12.1.(월) ~ 19.(금)

- 가. 원활한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 월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정을 시험장소(시험센터)별로 분리**하였으니 시험장소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정을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시험센터)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정

접수 시작일정	시험장소(시험센터)	비고
1일차	10:00 대전충청, 전북전주, 제주	예) 6월 에 경기성남 시험센터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접수하고자 할 경우 2.3.(월)부터 세부일정 확인 이 가능하며 5.7.(수) 14:00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14:00 강원원주, 대구경북	
2일차	10:00 부산경남	
	14:00 경기성남	
3일차	10:00 광주전남	
	14:00 서울구로	

* **1월에 시행하는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시작일정		시험장소(시험센터)
1일차	10:00	부산경남, 전북전주
1.2.(목)	14:00	대구경북, 광주전남
2일차	10:00	경기성남, 대전충청
1.3.(금)	14:00	서울구로, 강원원주, 제주

나. 20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12.19.(금)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다. 시험 세부일정이 공개되더라도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지역별로 예상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을 배정하여 시행합니다.

○ 주중(월~금)에 시험을 시행하며, 휴일(토요일)은 월 1회 시행예정입니다.

- 보건직업인국가시험 시행으로 인해 **1월, 11~12월은 휴일(토요일) 시험이 없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시험 일정은 **월별 시험 세부일정 공개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장소

구분	시험센터	주소	시험실 (응시 좌석 수)
1	서울구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21 (구로동)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 3,4층	6실 (270석)
2	경기성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73 (양지동)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뉴밀레니엄센터 3층	6실 (270석)
3	부산경남	부산광역시 남구 신천로 365 (용당동)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용당15관 1,2층	5실 (225석)
4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동구 침북로 80 (동내동) 신약개발지원센터 7,8층	3실 (135석)
5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봉선동) 광주광역시 남구청 3층	3실 (135석)
6	대전충청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 (탄방동) 국민연금공단 서대전지사 5층	4실 (180석)
7	전북전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13 (서신동) 국민연금공단 전주지사 4층	2실 (90석)
8	강원원주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189 (학성동) KT학성빌딩 2층	1실 (60석)
9	제주	제주 제주시 한라대로 38 (노형동) 제주한라대학교 하이테크센터 지하 1층	1실 (45석)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국시원 9개 시험센터에서 시행되며, 시험센터 선택은 응시자의 주소지 및 교육기관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택 가능합니다. 단, 시험센터 상황에 따라 응시 좌석 수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접수방법

구분	내용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정부부터 접수 마감일(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일 7일 전)까지 원서 접수(등록 및 제출 완료)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32,000원 • 응시원서 접수 시 부여되는 결제 마감시간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최종 접수마감일[2025.12.12.(금)]은 18:00까지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접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www.kuksiwon.or.kr [국시원 홈페이지-상시(기간제) 시험 홈페이지]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간편결제 • 가상계좌 입금(타행 이체 수수료 발생 시 본인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은행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 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함 ※ 감면 자격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수수료 감면대상자는 개인 접수 시 결제 진행 과정에서의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응시수수료 전액이 감면됨.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파일: 276×354픽셀 이상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 증명사진을 스캔할 경우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5.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의 주소지는 현재 거주지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 일정 및 시험장소(시험센터)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일 7일 전까지 시험센터와 시험일, 시험시간(오전/오후)을 선택하여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센터의 시험일과 시험시간(오전/오후) 잔여 좌석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예시: 2025. 4. 4.(금)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2025. 3. 28.(금)까지 원서접수하여 결제기한 내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 바. 시험센터 및 시험일정 변경은 본인이 국시원 홈페이지-상시(기간제) 시험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 메뉴 내 시험일자/장소변경에서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일에 시험시간과 시험센터의 잔여 좌석이 있어야 변경 가능합니다.
- 사. 개인별 연간 응시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불합격한 사람이 시험에 재응시하려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시험 접수가 가능하며, 시험일 선택은 합격자 발표일 7일 이후에 있는 시험부터 가능합니다.
- 예시: 2025. 4. 5.(토) 시험에 응시한 경우, 2025. 4. 7.(월)에 합격자 발표를 하며, 불합격하여 이후 재응시 접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025. 4. 14.(월)을 포함하여 이후에 있는 시험일정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교육기관(단체접수)의 경우 2024.12.30.(월), 10시부터 상시로 응시자 데이터(접수 정보)를 사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전 등록하였더라도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사전 등록한 응시자 데이터는 20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 응시원서의 기재(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결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차.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려는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상시(기간제) 시험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취소]에서 로그인 및 실명 확인 후 ‘응시취소 신청서 작성’을 등록하면 국시원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환불신청 후 응시원서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이 경과하거나 환불 처리가 완료된 이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 카. 장애인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1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단, 점자 또는 음성지원 컴퓨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 신청해야 함),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상시(기간제) 시험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편의제공 대상자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는 사람은 전액 감면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응시수수료 결제 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전액 감면합니다.
 - 감면자격확인은 단체 접수 화면에서 결제 시 불가하며, 개인 접수 화면에서 결제 시에만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기간 내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감면 별도 신청기간 : 시험일 기준 7일 전부터 시험일 7일 후까지
(※ 예시: 시험일이 2025. 3. 20.(목)이면, 2025. 3. 13.(목)부터 2025. 3. 27.(목)까지 응시수수료 감면 별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상시(기간제) 시험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문제수	배점	비고
1교시	1. 영양보호론(필기시험) (영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영양 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영양보호기술)	35문제	1점/1문제	객관식 (5지 선다형)
	2. 실기시험	45문제		

- ※ 2024. 1. 1. 이후 교육과정을 시작하고 모든 교육과정(이론강의·실기연습·현장실습)은 본인 시험일 전일까지 이수해야 함
- ※ 개정된 영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2024년도 개정판)는 2월 시험부터 적용하며, 1월 시험은 기존 교재(2023년 교재) 적용

나. 시험시간

구분	입장시작 시간	입장완료 시간	시험시간	중도퇴실 가능시간
오전 시험 (1사이클)	09:20~	~09:40	10:00~11:30 (90분)	11:00~
오후 시험 (2사이클)	12:50~	~13:10	13:30~15:00 (90분)	14:30~

- 입장시작 시간 전에는 시험장 입장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장시간에 맞춰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7. 합격자 결정방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①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PC를 이용한 컴퓨터시험으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시험(CBT)은 PC를 통해 답안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답안카드를 작성합니다.
- 응시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기기(PC)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종이시험과 동일한 객관식 5지 선다형 문제유형으로, 데스크톱 PC(모니터, 마우스)를 이용하여 답안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나. 요양보호사 컴퓨터시험(CBT) 응시자 안내 동영상은 국시원 유튜브 (YouTube)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시험(CBT) 튜토리얼은 [국시원 홈페이지-상시(기간제) 시험 홈페이지-시험안내-CBT 체험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kuksiwon.or.kr/CBT_35/index.html). (단, 튜토리얼 프로그램은 데스크톱 PC를 사용하는 실제 시험의 프로그램과 동일한 형태로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동되지 않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시험문제 및 정답은 ‘비공개’합니다.

라.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자)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본인이 접수한 시험일의 입장완료 시간(오전 시험 9:40, 오후 시험 13:10)까지 해당 센터 및 시험실의 지정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 본인이 접수한 시험 일정(시험센터, 시험일시)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시험 일정과 다른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입장시작 시간 전에는 시험장 입장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장시간에 맞춰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 여권(만료일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대한민국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응시표가 없는 경우, 응시번호 확인이 가능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 시계, 스마트밴드, 이어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 중도 퇴실 가능 시간 이후에는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시험을 종료하고 퇴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퇴실한 후에는 재입실이 절대 불가합니다.

○ 오전 시험은 11:00 이후, 오후 시험은 14:30 이후 각각 퇴실이 가능합니다.

○ 배탈·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합니다.

자. 컴퓨터 화면에서 시험시간 및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 계산, 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시계 등)는 사용이 불가하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에는 답안 작성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작 및 종료는 정해진 시각에 맞추어 자동으로 진행되며, 시험이 종료되면 답안이 자동 제출됩니다.

차. 시험 중 고의로 시험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 '0점'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센터는 차량 주차가 어려우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타. 시험실 내 응시자 개인물품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응시자는 개인물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부정행위 및 응시자 준수사항

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합니다.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 또는 문제지(시험기기를 포함한다)를 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제작)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을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을 제출하는 행위
8.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문제 또는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컴퓨터시험(CBT) 중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 등)를 시험기기에 연결하는 행위
1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 처리 지침」 등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합니다.

응시자 준수사항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부정행위자 기준 제10호 물품 제외)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7. 그 밖에 원장이 정한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10.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신청

가. 합격자 발표는 응시한 시험시간과 관계없이 응시자 본인의 시험 다음 날 10:00 이후에 발표 예정(발표일이 주말 또는 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발표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 미지참 및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가 보류됩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
- 휴대폰 문자(SMS)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 기재자에 한함)

나. 자격증 발급신청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자격증 발급신청은 합격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 (신청절차) [국시원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상시(기간제) 시험 홈페이지-로그인-자격/증명서-자격증 발급신청-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 페이지 이동
 -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이 승인되면 신청 본인 또는 신청을 위임받은 교육기관장의 PC와 연결된 프린터에서 자격증을 출력합니다.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다.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라. 합격자 사정은 채점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산채점 처리되며, 본인의 성적은 합격자 발표 후부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바. 본인이 작성한 답안카드(이미지)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답안카드를 열람하려면 답안카드 열람 방문 전 [국시원 홈페이지-대표 홈페이지-면허·자격·증명서-답안카드 열람 방문신청]을 통해 예약하고, 회신을 받은 후 열람일정을 확정하고 방문하도록 합니다.

○ 위 열람 일정이 확정된 사람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 하며, 방문 시 '답안카드 열람신청서' 를 작성한 후에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열람 중에는 복사, 사진촬영, 메일 전송 등은 불가합니다.

<별첨> 보건 의료인국가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지침

마침